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등 이용료가 2006년 6월 책정된 후 조정되지 않아 타지역 종합복지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경쟁력를 강화하고, 적자폭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고 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나.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다른 문구로 수정(안 제12조제2항)

다. 다른 법에 따른 감면대상 신설(안 제17조제7호)

라. 시설별 사용료 조정 및 신설(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2013. 3. 14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회원”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1~6(월~토)일 사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구포동 1023번지”를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단동 256-18번지”를 “산호대로 239 (공단동)”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술 취한 사람

제1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50%”를 각각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 : 50퍼센트 감면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0퍼센트 감면

제17조제9호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부터 적용하되 기간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 체육시설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colspan="3" rowspan="2">장소 및 사용구분</th><th rowspan="2">사용자</th><th colspan="2">기간별 적용기준</th></tr>
<tr><th>2013년 7월 이후</th><th>2014년 7월 이후</th></tr>
<tr><td rowspan="20">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종합
복지회관</td><td rowspan="9">수 영</td><td colspan="2" rowspan="3">월회원</td><td>일 반 인</td><td>55,000원</td><td>60,000원</td></tr>
<tr><td>청 소 년</td><td>46,000원</td><td>50,000원</td></tr>
<tr><td>노인・초등학생이하</td><td>38,000원</td><td>42,000원</td></tr>
<tr><td rowspan="6">일일회원</td><td rowspan="3">개인</td><td>일 반 인</td><td>3,300원</td><td>3,500원</td></tr>
<tr><td>청 소 년</td><td>2,700원</td><td>3,000원</td></tr>
<tr><td>노인・초등학생이하</td><td>2,300원</td><td>2,500원</td></tr>
<tr><td rowspan="3">단체</td><td>일 반 인</td><td>2,800원</td><td>3,000원</td></tr>
<tr><td>청 소 년</td><td>2,300원</td><td>2,500원</td></tr>
<tr><td>노인・초등학생이하</td><td>1,800원</td><td>2,000원</td></tr>
<tr><td rowspan="3">아쿠아
로빅</td><td colspan="2" rowspan="3">월회원</td><td>일 반 인</td><td>55,000원</td><td>60,000원</td></tr>
<tr><td>청 소 년</td><td>46,000원</td><td>50,000원</td></tr>
<tr><td>노인・초등학생이하</td><td>38,000원</td><td>42,000원</td></tr>
<tr><td rowspan="3">헬 스</td><td colspan="2" rowspan="3">월회원</td><td>일 반 인</td><td>38,000원</td><td>42,000원</td></tr>
<tr><td>청 소 년</td><td>33,000원</td><td>36,000원</td></tr>
<tr><td>노인・초등학생이하</td><td>22,000원</td><td>24,000원</td></tr>
<tr><td>에어로빅</td><td colspan="2">월회원</td><td>일 반</td><td>33,000원</td><td>36,000원</td></tr>
<tr><td>요 가</td><td colspan="2">월회원</td><td>일 반</td><td>33,000원</td><td>36,000원</td></tr>
<tr><td rowspan="2">탁 구</td><td colspan="2">월회원</td><td rowspan="2">일 반</td><td>28,000원</td><td>30,000원</td></tr>
<tr><td colspan="2">일일회원</td><td>2,300원</td><td>2,500원</td></tr>
</table>

※ 탁구장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임

※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문화강좌 시설

시설명	프로그램 명	수강료
근로자 문화센터	문화 웰빙 강좌	10,000원 ~ 50,000원
•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주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 기타시설

시설명	장 소		사용기준	기 본 사용료	비 고
근로자 문화 센터	기본 시설	강 당	평일주간 1회 (4시간이내)	6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야 외 무 대	〃	30,000원	
	부대 시설	냉·난방 (강당)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4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용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금액임.

※ 야간사용은 18:00 ~ 22:00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회원” 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6(월~토)일 사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월회원”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1~6(월~토)일 사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1.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구포동 1023번지에 둔다.	1.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구미시 공단동 256-18번지에 둔다.	2. ----------산호대로 239 (공단동)-----.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② ----------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정신이상자 또는 술 취한 자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술 취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의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3. ---------- 50퍼센트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1~3급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 50% 감면	4. ---------- 50 퍼센트 ----
5.「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단, 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동행자 1명 포함)	5. ----------

: 50% 감면	50퍼센트 ----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 50퍼센트 감면
7.「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 50% 감면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0퍼센트 감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월 사용료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9. ---------- 10퍼센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료 반환) ① (생 략)	제18조(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한다.	1. ---------- 10퍼센트----------10퍼센트----------.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2. ---------- 10퍼센트----------10퍼센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대비표

현 행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와 관련)

□ 체육시설

시설명	장소	사용일수		일반인	청소년, 군인	노인 초등학생 이하
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월 회원		50,000원	42,000원	35,000원
		일일회원	개인	3,000원	2,500원	2,000원
			단체	2,500원	2,000원	1,500원
	헬스장	월회원		35,000원	30,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회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탁구장	월회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일일회원		2,000원	2,000원	1,000원

개 정 안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 체육시설

시설명	장소(회원)			구분	기간별 적용기준 2013년 7월 이후	기간별 적용기준 2014년 7월 이후
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	월회원		일반인	55,000원	60,000원
				청소년	46,000원	50,000원
				노인·초등학생이하	38,000원	42,000원
		일일회원	개인	일 반 인	3,300원	3,500원
				청 소 년	2,700원	3,000원
				노인·초등학생이하	2,300원	2,500원
			단체	일 반 인	2,800원	3,000원
				청 소 년	2,300원	2,500원
				노인·초등학생이하	1,800원	2,000원
	아쿠아로빅	월회원		일 반 인	55,000원	60,000원
				청 소 년	46,000원	50,000원
				노인·초등학생이하	38,000원	42,000원
	헬스	월회원		일 반 인	38,000원	42,000원
				청 소 년	33,000원	36,000원
				노인·초등학생이하	22,000원	24,000원
	에어로빅	월회원		일반	33,000원	36,000원
	요가	월회원		일반	33,000원	36,000원
	탁구	월회원		일반	28,000원	30,000원
		일일회원			2,300원	2,500원

※ 탁구장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임

※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table>
<tr>
<td><신 설>

□ 기타시설 : (생략)</td>
<td>□ 문화강좌 시설
<table>
<tr><th>시설명</th><th>프로그램 명</th><th>수강료</th></tr>
<tr><td>근로자
문화센터</td><td>문화 웰빙 강좌</td><td>10,000원 ~ 50,000원</td></tr>
<tr><td colspan="3">•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td></tr>
</table>

□ 기타시설 : 현행과 같음</td>
</tr>
</table>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략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 ⑥ 생략

[전문개정 2011.8.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8.4>]